은행 및 금융기관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저희는 스위스 은행입니다. 새로운 라이선스 없이 가상자산 수탁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은행 라이선스는 부수 업무로서 가상자산의 수탁 및 거래를 포괄하며, 영업 변경 사항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에 신고하면 됩니다. 은행은 바젤 기준을 이행한 FINMA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 익스포저의 자본 처리, 은행법 제16조 제1bis호에 따른 분리,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INMA는 서비스 개시 전에 위험 분석, 사업계획 및 운영 역량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1]

저희는 싱가포르 은행입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고객을 위한 디지털 지급 토큰(DPT)의 수탁 및 거래에는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상 면제 또는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대부분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은행 라이선스에 의해 이를 보유하며, DPT 고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토큰화 예금과 Project Guardian 시범사업 참여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샌드박스 및 시범사업 체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DPT의 개인 고객 대상 판매는 소비자 접근 조치에 의해 제한되며, MAS는 은행이 개인 고객에게 DPT 거래를 제공하는 것을 만류해 왔습니다.[2]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고객이 토큰 판매 대금을 예치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요구해야 합니까? 분류 메모랜덤 또는 FINMA 평가서, 토큰 판매 서류, 구매자 목록과 그 고객확인 증거, 대금의 온체인 기록, 법정화폐로의 전환 경로, 대금의 세무 처리, 그리고 대금 사용 계획입니다. 평판 있는 자금세탁방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구매자 고객확인을 거쳤고 FINMA 평가서를 갖춘 토큰 판매는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익명 구매를 받아들인 토큰 판매는 금액과 관계없이 그렇지 않습니다.[3]

고객의 스테이킹된 ETH를 자본 및 분리 목적상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스위스에서는 FINMA의 2023년 지침에 따라, 은행은 다섯 가지 조건하에 스테이킹된 자산을 은행법 제16조에 따라 분리 가능한 수탁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계속 고객에게 귀속되어 있을 것, 고객이 스테이킹을 지시하였을 것, 검증인이 특정되어 있을 것, 슬래싱 및 언본딩 위험이 고지되었을 것, 그리고 은행이 그 자산을 자기 자산과 합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밖의 조건으로 스테이킹된 자산은 예금이며 은행의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DPT 제공자의 개인 고객 대상 스테이킹이 금지되어 있으며, 적격 투자자의 경우 수탁 약관이 소유권과 위험을 다루어야 합니다.[4]

고객의 지갑이 제재 대상 믹서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 경보로 취급하고 문서화된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노출이 직접적인지(고객이 제재 대상 주소와 거래한 경우), 간접적인지(자금이 중간 주소를 거쳐 온 경우)를 판단하십시오. 경제사무국(SECO) 또는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정한 주소에 대한 직접 노출은, SECO가 이를 지정한 경우 스위스에서 금지된 거래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중대한 위험 지표입니다. 분석을 문서화하고,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 또는 의심거래보고사무소(STRO)에 대한 보고를 검토하며, 보고 기준이 충족되면 동결하고, 보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제II장의 트래블룰 및 지갑 심사 절차가 조사에 적용됩니다.[5]

트래블룰 이전을 위해 거래상대방의 지갑을 심사해야 합니까? 두 나라 모두 그렇습니다. 다만 의무의 내용은 다릅니다. 스위스는 상대방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VASP)의 식별을 요구하며, 비수탁형 지갑의 경우 고객의 통제권 확인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을 요구합니다. 싱가포르는 PSN02에 따른 거래상대방 실사와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위험 기반 조치를 요구합니다. 트래블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없는 거래상대방으로의 이전은 고위험으로 취급해야 하며, 많은 기관은 이를 아예 차단합니다.[6]

주

1. 은행법 제3조 제2항 및 제16조 제1bis호; 회람을 통한 FINMA의 가상자산 익스포저에 관한 BCBS 건전성 기준(SCO60) 이행; 제E편 제II장 및 제O편 제V장 참조. ↩
2.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 s. 13(면제 지급서비스 제공자) 및 First Schedule; MAS 소비자 접근 조치; 제K편 제III장 및 제VII장 참조. ↩
3. 제F편 제III장 및 제P편 제IX장. ↩
4. 2023년 12월 20일자 FINMA 지침 08/2023; MAS 소비자 접근 조치; 제E편 제VIII장 및 제K편 제VIII장 참조. ↩
5. 자금세탁방지법 제9조 및 제10조; 금수법; 부패·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이익몰수)법(CDSA) s. 45; 제F편 제V장 및 제VII장, 제L편 제IV장 및 제VI장 참조. ↩
6. FINMA 자금세탁방지령 제10조; MAS Notice PSN02; 제F편 제IV장 및 제L편 제III장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